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가합55871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0. 11.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637,123원과 그중 215,673,554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3.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19. 6.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 6. 5. 접수 제6444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재판장판사심재남

판사이수웅

판사여동근

별지